

1. 개정이유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개선을 희망하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 개선되지 못하는 안전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전에 대해서도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자 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7항을 제8항으로, “제6항에 따라”를 “제6항과 제7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분과위원회의 운영) ①~⑥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⑦ <u>제6항에 따라</u> 위원회에서 재 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 해 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에 참 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/p>	<p>제9조(분과위원회의 운영) ①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 다.</u></p> <p>⑧ <u>제6항과 제7항에 따라</u> 위원 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·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/p>